
문서번호 : 16-05-사무-07
수 신 : 각 언론사 제위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오지은 간사, 조영선 변호사 / T. 02-522-7284)
제 목 : [민변][취재협조요청] 오종상외4인, 긴급조치 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 청구 대법원
선고_2016. 5. 12.(목) 14:00, 대법원 제2호 법정
전송일자 : 2016. 5. 11.(수)
전송매수 : 총 4매

[민변][취재협조요청]
오종상외4인, 긴급조치 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 청구 대법원 선고
(2013다200759 국가배상)

2016. 5. 12.(목) 14:00 대법원 제2호 법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8년 이래 긴급조치 변호단을 구성하여 과거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 도구였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에 대한 형사재심 청구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하여 대법원(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 등)과 헌법재판소(2013.3.21.선고 2010헌바70.131.170 결정)로부터 위 긴급조치 등이 '당초부터' 위헌이라는 결정을 득하였습니다.
3. 특히 대법원은 2010. 12.16. 피고인 오종상의 반공법, 긴급조치1호 위반 형사 재심사건(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에서, 긴급조치 1호가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서 '법률'이 아니므로 대법원에 위헌심사의 관할권이 있고, 그런데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에 위반하여 긴급조치가 실효, 폐지되지 이전부터 '당초부터' 위헌이라면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긴급조치, 반공법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오종상은 2007.10.30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에 대한 진화위의 진상규명 결정을 득한 후 2009.2.12. 긴급조치 사상 처음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형사재심청구를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긴급조치 면소(법령 폐지사유), 반공법 무죄를 선고(2010.4.30.선고 2009재노19판결)하였으며, 결국 상고심에서 항소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오종상은 긴급조치로 인해 유죄판결에 따른 3년 여의 수형생활 외에 적어도 2007년 이래 9년여 기간동안 진화위, 형사재심, 국가배상 사건 등에 소모한 것입니다.

4. 당시 형사 재심 청구인 오종상은 1974년 5월 17일 우연히 버스 안에서 저축 용변대회에 참가하는 여학생들에게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인해 유신헌법 '비방'죄 등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으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선고받아 실형을 살았고, 이로 인해 가정은 파탄 났으며,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36년 제대로 직업도 가져보지 못한 채 어두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5. 이에 변호단은 오종상과 그 가족 4명을 대리하여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2011.7.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일부 인용승소 판결(2012.5.3. 선고 2011가합78601판결)을 받았고, 다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12.21. 선고 2012나43159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2013.1.28. 상고하여 3년 4개월여 만인 오는 **5.12일 상고심 판결 선고(대법원 2013다200759판결, 민사 제3부)에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오종상은 각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일부 인용하였던 것에 반해, 1심과 동일하게 영장 없는 체포감금, 고문 폭행 등을 인정된 후 피고 대한민국의 시효주장 및 민주화법상 재판상 화해 주장 또한 배척하면서 원고 오종상의 청구까지 인용하였습니다.

6. 이번 오종상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청구사건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의미와 쟁점이 있습니다.

① **최근 대법원 판결의 기초에 비추어 여전히 반역사적 판결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2015.3.26. 선고 2012다48824판결 등)이후 하급심 대부분의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고문 폭행이 있더라도 당시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시효소멸 등을 이유로 기각해왔습니다.

②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일 경우,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전히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기각할 것인가?

이미 대법원(2015.3.26. 선고 2012다48824판결.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개개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을 여전히 수호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③ **소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가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용할 것인지.** 아니면 고의과실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을 유지할 것인지

원고 오종상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감금되어 고문·폭행 등을 당한 전형적인 막걸리 반공법 위반사건으로, 고문에 의해 발언하지 않은 내용(학생들에게 북한과 합쳐져 나라가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 등)을 말해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형사재심 판결 및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 오종상에 대해서 1주일 동안 불법체포·구금을 하였고 고문 등에 의해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4.10.27.선고 2013다217962 판결, 민사 제2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신영철, 주심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에 의하면 고문폭행 등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까지 받은 후 형사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 그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제한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④ 원고 오종상은 7일여에 걸쳐 불법 감금 하에 고문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 청구를 하였는바, 피고 대한민국의 시효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대법원 판결과 같이 긴급조치 '당시'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할 것인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재심 판결 및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 오종상에 대해서 1주일 동안 불법체포·구금을 하였고 고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원고 오종상의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과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았던 바, 1심과 마찬가지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이를 재판상 화해로 보고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 판결과 같이 인용할 것인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재판상 화해 주장 및 1심에서 이를 인정한 판단을 일축하고 민보상법상 보상 등은 민주화보상법 상의 보상청구권일 뿐 재판상 화해를 민사상 청구까지 무제한 확대할 수 없고, 양보하여 민사상 청구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손해에 미치고 원고 오종상 및 그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배척할 것인지. 특히 원고들은 대법원에 민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이 또한 기각할 것인지.

⑥ 한편, 이 사건은 반공법 및 긴급조치 제1호 위반 '병합'사건인바, 긴급조치가 이러 저러한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반공법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까지 부인될 것인가.

7.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원고 오종상 씨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